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52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박지혜・이기헌・김성환

임미애 · 황명선 · 위성곤

이건태ㆍ허 영ㆍ이소영

김정호 · 조인철 · 서영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확충"을 "확충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②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u>확충</u> 에	3 <u>확충 및</u>		
관한 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		
	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